

#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박기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31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2일  
발 의 자 : 박기재, 권수정, 김경영,  
김경우, 김소영, 김제리,  
김호진, 김화숙, 문병훈,  
오한아, 이광호, 이영실,  
이정인, 조상호 의원(14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시립사회복지시설은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3조의 별표 목록기준으로 하고 있어, 신규설치 등 때마다 별표 목록의 개정을 위해 비효율적인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. 이에 별표를 삭제하고 시립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시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.
-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의 적용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간 충돌 가능성이 있어,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인 별표를 삭제하고, 시립 사회복지시설 명단을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.

나. 사회복지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 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을 준용조항에서 삭제함(안 제6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별표와 같다”를 “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5항 중 “제10조부터 제11조까지”를 “제10조, 제1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, 제11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